

	<h2 style="margin: 0;">학생상담센터 운영규칙</h2>		규정번호	4-0-12	
			제정일자	2020.03.01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0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 연구 활동을 시행하는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 ① 센터에는 학생상담센터장을 두고 상담사, 학생상담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학생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상담사는 상담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상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자로 한다.
 - ④ 학생상담전문위원은 학생상담 업무를 지원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2. 위기상담(자살 및 위기대처 상담)
3. 학생상담 운영의 연간 기본 계획 수립
4.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
5. 인터넷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6. 학생생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자료집 발간

제4조(비밀준수) ① 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모든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다만 센터 이용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상담실 이용 학생에 대한 정보를 상담사가 센터장 및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5조(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상담사, 학생상담전문위원, 학생서비스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상담 운영 연간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담 관련하여 총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자살 및 위기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① 본교 재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살 및 위기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기상황은 학생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장, 상담사, 학생상담전문위원, 학생서비스센터장, 보건 담당자, 해당 학생 지도교수로 하고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기상황 발생 시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살 및 위기 상황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중재를 한다.

⑥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